

세법연구 10-02

# 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 조사

김진수 · 조진권 · 정경화

2010. 8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 목 차

I. 서론	5
II.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	7
1. 개요	7
2. 원산지 표시제도 규정	8
3.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10
III. 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	15
1. 미국	15
2. 일본	26
3. 싱가포르	35
4. 베트남	37
5. 노르웨이	38
6. 스위스	40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42
1. 국제비교	42
2. 시사점	44
[부록]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 규정	47
참고문헌	62



## I. 서론

- 자유무역의 확대와 다국적 기업의 증가로 인해 기업의 생산활동은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져 원산지 제도와 원산지 효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원산지를 어떻게 판단하도록 규율하느냐에 따라 국제투자, 생산과 판매, 그리고 무역 형태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며, 원산지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것은 무역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일임<sup>1)</sup>
    - 그러나 국가별 국제규범의 규제 없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자의적으로 원산지 제도를 운영하여 국제무역의 장애요인으로 등장
  - WTO에서는 1995년부터 통일원산지협정의 제정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국가간의 의견 불일치로 아직 완성된 규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sup>2)</sup>, 원산지 표시제도는 각국에 일임되어 운영되고 있음
  - 원산지 효과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라도 원산지에 따라 제품의 판매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침
    - 원산지 효과란 제품의 원산지를 분명히 표시할 경우 당해 제품을 생산한 국가의 이미지가 제품의 가치에 투사되어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
  
- 우리나라는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당사국간의 교역을 증대시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음
  -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역외가공(overseas processing)을 FTA에서 인정하는지 여부는 원산지 결정에서 중요한 문제임
    -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에서는 역외가공을 인정<sup>3)</sup>

---

1) 정재완(2010), p. 534

2) 성윤갑(2007), p. 319

WTO 웹페이지 뉴스자료,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oi\\_e/roi\\_e.htm](http://www.wto.org/english/tratop_e/roi_e/roi_e.htm) 2010년 6월 접속

3) 성윤갑(2007), p. 548

- 이에 본 보고서는 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조사하여 우리의 원산지 표시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와 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 현황에 대해서 살펴봄
  - 제Ⅲ장은 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국한하여 파악함
    - －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제도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아니함
  - 외국 자료의 조사 범위에는 자료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국, 일본, FTA 체결 국가<sup>4)</sup> 등으로 함
  
- 제Ⅳ장에서는 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특징과 비교·분석하고자 함

---

4) 발효된 FTA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이며, 서명 및 협상타결 FTA 국가는 미국, EU임

## II.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

### 1. 개요

- 원산지(Origin of goods)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원산지 제도는 크게 원산지 결정제도와 원산지 표시제도로 구분될 수 있음
  - 원산지 결정은 다음과 같이 2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음
    - 완전생산기준: 당해 물품이 1개국에서 완전히 획득·생산 및 사육, 번식된 경우에 당해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실질적 변형기준: 당해 물품의 제조에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 보다 중요한 공정이 많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국가를 수출입 물품에 인쇄, 라벨, 주조 등의 방법으로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하는 것을 말함
    - 우리나라는 원산지 표시제도를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수출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음<sup>5)</sup>
  - 생산 활동의 세계화로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면서 저가 수입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보호 기능이 있음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산지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공정 수출입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음<sup>6)</sup>
  - 병충해 발생 지역(국가)으로부터의 수입,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국제거래

5) 박형래·라공우(2006), p. 525

6) 이제홍(2007), p. 356

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기능이 있음

## 2. 원산지 표시제도 규정

-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규정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 규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있음
  - 대외무역법과 시행령, 규정에는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위반시의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관세법에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음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는 「관세법」 제230조, 제231조 및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 관련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

〈표 II-1〉 우리나라 원산지 표시 규정

관련법규	관련조항	비고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지정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제57조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제58조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제5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등
	제76조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제77조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제78조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제79조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제80조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제81조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의 세부사항
	제82조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제83조	원산지 표시의 확인·검사
제84조	원산지 표시의 사전확인 및 이의제기	

〈표 II-2〉의 계속

관련법규	관련조항	비고
관세법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등의 통관제한
	제231조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고시	제2-3조	환적 또는 일시장치 물품 등의 원산지 확인 방법
	제3-1조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방법
	제3-2조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
	제3-3조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표시방법 지정
	제3-4조	원산지 국명 표기
	제3-5조	원산지 표시의 면제
	제3-6조	수입통관 후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등
	제4-4조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제4-6조	세관 원산지심사위원회
	제5-1조	허위표시 물품의 판정
	제5-2조	오인표시 물품의 판정
	제5-3조	부적정표시 물품의 판정
	제5-4조	미표시 물품의 판정
	제5-5조	표시 손상의 판정
	제5-6조	원산지 표시 관련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5-7조	원산지 표시상태의 입력
	제6-1조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제6-2조	시정조치 요구
	제6-3조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
	제6-4조	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의 처리
	제6-5조	범칙조사 의뢰
	제6-6조	과징금 부과
	제6-7조	수입통관 후 원산지 표시 검사

자료: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지식경제부 (<http://www1.mke.go.kr/>)

### 3.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 가. 대상물품

##### 1) 표시대상 물품

- 대외무역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수입물품 중 농수산물, 식품류, 의류, 가방, 전자제품, 게임 용구 등 소비재 위주로 HS<sup>7)</sup> 4단위 653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공고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음(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1)
  - 2004년 9월 1일부터는 활어의 보관시설 및 운송차량에도 탱크별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
-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원산지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수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

##### 2) 표시대상 제외물품

-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규정하고 있음
  -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에서 12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3-5조)에서 2개 유형으로 나누어 원산지 표시 면제물품을 구분하고 있음

---

7)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로서 국가간 유통되는 상품의 이동을 촉진하고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물품을 6단위 번호체계로 분류하여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체계임

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의 면제대상

-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12개 유형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 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자재로 수입되는 물품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
  - 판매 또는 임대 목적이 아닌 물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부품을 포함)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
  - 연구개발 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
  -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품
  -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
  - 재수출 조건부 면제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외교관 면제대상 물품
  -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기타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나)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의 면제대상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는 다음의 2개 유형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
  -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규정한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면제할 수 있음
    -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함

## 나. 표시기준

### 1) 표시원칙

- 원산지 표시는 물품 제조과정에서 표시하는 것이 가장 용이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원산지 표시의무는 수입자가 지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국으로 반입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2) 표시방법

- 원산지는 당해 현품에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소비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함
  - 원산지 표시는 당해 물품(현품)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물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음
  -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함
  -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함

- 물품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 구매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함
  -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함
  -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함
- 표시방법은 제조 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으나, 표시하는 경우 수입물품과 같이 영문 등으로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함
-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우리나라와 다를 경우에는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면 되지만, 수입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단순가공하거나 중계무역, 반송절차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음

#### 다. 표시위반에 대한 처리

- 원산지 표시는 표시 형태, 위치, 방식, 언어 등 모두가 관련법에 따라 적정히 표시되어야 함
- 수출입물품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징역,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조치를 하게 됨
-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원산지 무표시, 허위 표시, 오인 표시, 혼동 표시한 자 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벌금에 처하게 됨
-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

나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수입 통관 후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 가공을 거쳐 거래하거나 날개 또는 산물로 거래되는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자 그리고 원산지 표시위반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거부·방해 및 기피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됨

○ 대외무역법 제59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Ⅲ. 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

### 1. 미국

#### 가. 개요

-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을 수입단계에서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수입시점에 상품 및 개별포장에 읽기 쉬운 문자로 가능한 잘 보이는 장소에, 영어로 원산지 국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대상은 모든 수입물품에 적용되며, 표시 제외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불명확한 원산지 표시는 관세법이나 미 연방거래위원회규정에 의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표시된 원산지를 숨기는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정되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음
  - 원산지 표시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반송 또는 폐기시키거나 세관 감독하에 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부정확하게 표기한 것으로 위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물품의 압류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나. 원산지 표시제도 규정

- 미국의 개별법령에서 규제되는 이외의 물품은 1930년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

이하 관세법<sup>8)</sup> 제1304조<sup>9)</sup>와 통상무역법(Commerce and Trade Act) 제45조<sup>10)</sup>, 연방무역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에서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제1304조에서는 수입물품과 용기의 표시(Sec. 1304. Marking of Imported articles and containers)를 다루고 있음
- 통상무역법 제45조에서는 불공정한 거래상관행의 금지조항(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unlawful; prevention by Commission)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산('made in U.S.A.', 'made in America', USA, 또는 Our products are American made) 표시는 의무규정이 아니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미국산이란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표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연방무역거래위원회법은 미국 원산지 표시를 하는 물품의 허위·오용표시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무역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게 부여하고 있음
  - 연방무역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 등을 규제하는 책임을 부여받아 미국 원산지 표시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음

□ 자동차와 섬유제품은 최종생산품이나 부품 등의 미국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음

- 1994년 10월 1일 이후 제조된 차량은 자동차 조립 국가, 미국산 부품의 비율, 자동차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생산지 등을 미국자동차표시법(America Automobile Labeling Act)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섬유, 울 제품의 경우 최종생산지역이 미국인 경우 섬유제품증명법(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 울제품표시법(Wool Product Labeling Act)에 따라 미국산 표시 의무가 있음

8) 1930년 관세법은 5개의 절(subtitle)로 제1202조부터 제1681b조까지 총 24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9) 19 U.S.C. §1304

10) 15 U.S.C. §45

-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에 따라 정부조달 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 중 미국산 부품이 50%를 넘는 경우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시하여야 함

## 다.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 1) 표시대상 품목

-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 물품(every article of foreign origin) 또는 그 포장 용기(its container)에는 미국내 최종소비자(ultimate purchaser)가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영문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미국 속령에서 재수출된 외국산 물품, 즉 미국속령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경우라도 원산지가 당해 미국속령이 아니라 제3국산 제품일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직접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과 동일하게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보세창고에서 재포장된 물품, 세척, 분류, 포장 등 단순처리된 물품, 자유무역지대에서 비제조·단순처리된 물품도 원산지표시가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를 위해 반출되는 시점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가) 물품의 표시

- 원산지 표시 제외대상 품목을 제외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해당물품의 특성(nature of the article)에 맞게 표시하여야 함
  - 물품의 적합한 부분에 최종소비자가 원산지 영어지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conspicuous place)에 표시함
  - 읽기 쉽고(legibly), 지워지지 않고(indelibly), 영구적으로(permanently) 물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표시되어야 함
- 미국 재무부장관(The Secretary of the Treasury)은 원산지 표시에 관해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원산지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단어, 문구, 약어의 철자를 정하거나, 인쇄, 스텐실(stenciling), 인박(stamping), 낙인(branding), 라벨링(labeling)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물품의 적당한 곳에 표시하는 방법<sup>11)</sup>
- 수입물품 또는 통상 수입물품과 결합되는 물품으로 수입되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되기 전의 물품의 원산지의 위조(deception)나 실수(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단어나 상징(symbols)의 추가사항<sup>12)</sup>

#### 나) 용기의 표시

- 용기(container)의 원산지 표시는 일회용, 재사용 가능 여부, 물품 적재여부, 빈 용기 상태로 수입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표시방법이 다름
  - 용기 자체가 하나의 수입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용기의 원산지를 영어로 표시하여야 함
- 세관장의 재량으로 용기의 표시면제가 허용될 수 있음<sup>13)</sup>
  - 재포장물품(repacked articles)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재포장하는 용기에 내용물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
  - 수입자가 자기비용으로 세관원(Customs officers)에게 수입물품이 재포장될 용기상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보증하는 경우

#### 2) 표시대상 제외품목

- 원산지 표시대상 제외물품의 허가대상은 미국 재무부장관 결정사항으로, 관세법 제 1304조(a)(3)에 규정되어 있음

---

11) 19 U.S.C. §1304(a)(1)

12) 19 U.S.C. §1304(a)(2)

13) 19 C.F.R. §134.34

〈표 Ⅱ-3〉 원산지 표시대상 제외품목의 허가대상

(A)	표시가 곤란한 물품
(B)	미국으로 선적하기 전에 물품을 훼손함(injury)이 없이 표시할 수 없는 물품
(C)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선적 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물품
(D)	용기의 표시가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물품
(E)	천연 물질(crude substance)
(F)	수입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수입된 형태 또는 다른 형태로 판매되지 않는 것
(G)	미국 내에서 수입자가 직접 또는 수입자에 의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 조에서 정한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 또는 영구히 감추기 위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한 가공을 거친 물품
(H)	최종소비자가 물품의 특성 또는 수입시의 환경으로 인하여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당연히 인식되는 것
(I)	미국으로 수입되기 최소 20년 전에 생산된 물품
(J)	1937년 1월 1일 이후 2년 이내에 주간 재무부 공부에 재무부장관이 공고한 것과 동종 또는 동질의 물품으로 1937년 1월 1일 직후 5년 동안 상당한 양으로 수입된 동종 또는 동질의 물품이며 동기간 동안 원산지 표시의 의무가 없었어야 함. 단, 동호의 규정은 1938년 1월 이후에는 판재 및 목재, 전화, 트롤리, 전구 그리고 전신주 그리고 지붕널판지 묶음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대통령은 제1351조, 제1352조, 제1353조 및 제1354조에 의거 발효된 통상조약(trade agreement)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K)	표시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및 수입 전의 표시 불이행의 원인이 수입자, 제조자, 판매자 또는 선사가 이 조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의 물품

□ 일반적인 원산지 표시대상 제외물품(general exceptions to marking requirements)은 19 C.F.R. §134.32에서 규정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대상 제외물품이 포장용기에 포장되어 수입된 경우에는 포장용기 겉면에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용기자체도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표 II-4〉 일반적인 원산지 표시대상 제외품목

(a)	원산지 표시가 불가능한 물품
(b)	물품의 손상없이 미국으로 수입되기 위해 선적하기 이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물품
(c)	원산지 표시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선적 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물품
(d)	용기의 표시가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물품
(e)	천연물질 물품
(f)	수입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수입된 형태 또는 다른 형태로 판매되지 않는 것
(g)	수입자가 원산지 은폐 이외의 목적으로 미국 내에서 가공하여 실질적 변형을 거쳐 미국산으로 변경되는 물품
(h)	수입품의 형태 또는 특성으로 인해 최종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는 물품
(i)	미국으로 수입되기 최소 20년 전에 생산된 물품
(j)	즉시 수출 또는 수송 등으로 보세창고에서 반입 또는 반출되는 물품
(k)	면세(free of duty)되는 미국산 수산물품
(l)	미국 속령(possession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생산된 물품
(m)	미국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된 물품
(n)	C.F.R. §10.151~10.153, C.F.R. §141.31~141.32에 의거하여 면세되는 물품
(o)	표시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및 수입 전의 표시 불이행의 원인이 수입자, 제조자, 판매자 또는 선사가 이 조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의 물품
(p)	NAFTA 국가의 예술작품
(q)	관세율표 3904.10, 8541, 8542호에서 규정하는 NAFTA 국가의 물품

□ 원산지 표시대상 제외물품을 'J-List exceptions'라고 하여, 19 C.F.R. §134.33에서 규정하고 있음

○ J-List는 80여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표 II-5〉 원산지 표시대상 제외품목(J-List)

물품(Articles)	참조
예술 작품(Art) 황마, 삼베(jute) 단추 캡슐이나 알약에 포함되어 수입된 화학·의학 물질 및 그와 비슷한 물질 담배 등 계란 깃털 장작, 땀나무 마룻바닥 꽃, 조화 낚시용 갈고리 그물 신물용지 핀 대나무 펄프용지 리본 나무로 만든 지붕널 우표 등	Treasury Decisions 49750; 50366(6)  Treasury Decisions 50205(3)             Treasury Decisions 49750 Treasury Decisions 66-153

### 3) 표시기준

- 1930년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 이하 관세법) 제1304조에서 원산지 표시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최종구매자가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물품의 제조 과정에서 표시(time of manufacture)할 때 가장 적절하게 충족될 수 있음<sup>14)</sup>
  - 금속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주형, 식각 작업시 원산지 표시가 가장 적정하며, 질그

14) 19 C.F.R. §134.41(a)

룻 및 사기그릇은 가마구이 과정에서, 종이제품의 경우에는 인쇄시 원산지표시가 가장 권장됨

- 원산지 표시의 영구성 정도는 최소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지만 않는다면, 최종소비자가 그 물품(또는 그 용기)에 원산지 표시가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할 수준이어야 함<sup>15)</sup>
  - 원산지 표시는 물품의 정상적인 배포 보관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아야 함
  - 미국 내의 최종소비자가 무리없이 쉽게 원산지 표시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함
  
- 원산지 표시방법은 물품자체에 표시하거나, 종이스티커, 감압라벨(pressure-sensitive labels), 꼬리표(tags)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sup>16)</sup>
  - 표시위치는 물품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함
    - 원산지 표시가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되었는지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상품의 성격 및 소비자의 구매형태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됨
    -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뒷면에, 가구는 뒷면 또는 바닥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원산지 국가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정식명칭을 표시하여야 함<sup>17)</sup>
  - 관세청장(Commissioner of Customs)은 정식명칭이 아닌 특별한 방식의 국가명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음
    -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나 관세청공보(Customs Bulletin)에 게재하여야 함
  - NAFTA 국가의 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영어 이외에 불어와 스페인어로 국가명을 표시할 수 있음<sup>18)</sup>

---

15) 19 C.F.R. §134.41(b)

16) 19 C.F.R. §134.44(b)(c)

17) 19 C.F.R. §134.45(a)

18) 19 C.F.R. §134.45(a)(2)

- 원산지 국가명은 약어 등 다양한 철자가 허용되기도 함<sup>19)</sup>
  -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Luxembourg’을 ‘Luxemb’와 ‘Luxembg’로 표시하는 것이 인정됨
  - 다른 철자이지만 원산지를 영어 국가명으로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Brazil’을 ‘Brasil’, ‘Italy’을 ‘Italie’로 표시하는 것도 인정됨
  
- 형용사적 형태의 국가명 표시도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로 인정됨
  -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원산지표시가 아닌, 특정 상품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의 원산지표시는 허용되지 않음
    - 예: ‘English walnuts’, ‘Brazil nuts’
  
- 본국의 영역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보호령의 명칭도 적절한 원산지 국가명 표시로 인정됨<sup>20)</sup>
  - 원산지 이외의 국명이나 지명이 표시된 물품의 경우 최종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단어, 글자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연방관보나 관세청공보에 식민지, 속령, 보호령과 함께 추가적인 단어를 기재하도록 할 수 있음
  
- 조건 없는 ‘미국산’ 표시(made in U.S.A. without qualification)<sup>21)</sup>는 제품의 모든 주요한 부분이 미국산이어야 하고, 또는 그 제품의 공정이 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최종 조립단계 또는 생산단계가 미국에서 이루어질 것
  - 최종 제품의 비용계산이 미국산 부품과 미국 내 생산 활동을 근거로 할 것
  - 외국산 부품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함
  
- 조건부 ‘미국산’ 표시는 미국산 내용물 또는 공정이 접하는 비중, 양 또는 유형을 표시할 수 있음<sup>22)</sup>

19) 19 C.F.R. §134.45(b)

20) 19 C.F.R. §134.45(d)

21) All or virtually All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 예: 60% 미국산, ‘미국내용물 및 외국내용물로 미국에서 제조(made in U.S.A. of U.S. and imported parts)’, 또는 ‘이탈리아산 가죽과 멕시코산 틀로 미국에서 조립 (Couch assembled in USA from Italian Leather and Mexican Frame)’ 등으로 표시함
  - 단, 제품의 중요한 부분이 미국산 또는 미국 공정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표시를 할 수 없고, 증빙될 수 있어야 함
- 특정 제조과정 또는 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졌음을 표시할 경우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함
  - 미국에서 디자인하고, 제품은 핀란드에서 제조(Designed in USA, Made in Finland)
  - 소프트웨어의 경우(Software written in US, Disk made in India)
  - 컴퓨터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미국에서 포장하는 경우(Computer Made in Korea, Packing Made in USA)

#### 4) 표시위반에 대한 처리

- 불명료한 원산지 표시는 1930년 관세법과 연방무역위원회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원산지 국명을 표시하였어도 표시된 원산지를 숨기는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정되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됨
  -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시키거나, 세관 감독하에 재표시를 하도록 함
  - 원산지를 미표시하고 적절히 표기한 거승로 위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물품의 압류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가) 관세법령상의 벌칙

- 1930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에 따라 주어진 정보를 은닉하려는 목적으

로 원산지 표시를 파손, 손상, 제거, 변조, 덧씌우기, 지우는 자는 관세법에 의해 처벌됨<sup>23)</sup>

- 초범에 대해서는 1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과 징역을 병과함
- 재범 또는 그 이상의 누범에 대해서는 25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과 징역을 병과함

□ 물품(그 포장 용기) 검사결과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 수입통관 세관장(port director)은 수입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적절하게 표시하게 하거나 모든 반출물품을 재표시, 반송, 폐기를 위해 세관관리구역(Customs custody)에 반입하도록 통지하여야 함<sup>24)</sup>

- 재표시, 반송, 폐기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납득할 정도로 물품의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함
- 적법하게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수입물품의 재표시, 반송, 폐기에 따른 경비는 수입자가 부담함

□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고의로 제거, 손상, 파괴, 변경, 은닉 등의 방법으로 알아볼 수 없게 한 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과 징역을 병과함<sup>25)</sup>

#### 나) 통상무역법상의 벌칙

□ 통상무역법상에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한 경쟁방법 또는 기만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sup>26)</sup>

-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고의로 허위 표시된 상품을 수입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

23) 19 U.S.C. §1304(l)

24) 19 C.F.R. §134.51

25) 19 C.F.R. §134

26) FTC §5

## 라. 한·미 FTA와 역외가공

- 한·미 FT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역외가공 인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sup>27)</sup>
  -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최종협상을 통해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여지가 있어서 이에 따라,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sup>28)</sup> 지정을 통한 개성공단 제품의 특혜 원산지 인정 협의조항을 마련하였음
- 한·미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하고 있음

## 2. 일본

### 가. 개요

- 일본의 원산지 규정은 교토협약에 근거하여 명료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보다 행정규칙에 의존도가 높은 편임<sup>29)</sup>
  - 관세법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은 관세관계기본통달 68-3-5(원산지인정기준), 원산지 표시기준은 관세관계기본통달 71-3-1(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관한 용어의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의 경우 일부 품목에 한하여 특정 법규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미미한 실정임<sup>30)</sup>

27) 성윤갑(2007), p. 560

28) 두 개의 국가가 FTA를 체결한 경우, 체결당사국 내에서 반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제3국에서 가공하고 다시 역내로 재수입하여 최종 제품을 만든 후 상대 체결당사국에 수출하는 것을 의미함

29) 이명화, 「각국의 원산지 표시 사례연구: FTA(자유무역협정)체결 시대에 부응하여」, 한국행정학회, 2007, p. 412

30) 성윤갑, 「한국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5, p. 47

-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은 별도 규정 등을 통해서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지정
- 하지만 원산지의 허위·오인을 유발하는 ‘부당한 표시’에 대해서는 관세법, 수출입 거래법, 외국환관리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여러 법규에서 엄격하게 규정
  
- 일본의 원산지 표시규정은 비특혜분야에서 다루고 있어서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 특혜분야는 특혜관세 적용대상국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는 관세잠정조치법과 일-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이 있음
  - 비특혜분야에는 관세법, 수출입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상공회의소법, 부당경품류 및부당표시방지법(이하 경표법), 수입물품에대한농림물자의규격화및품질표시의 적정화에관한법률(이하 JAS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음

#### 나. 원산지 표시제도 규정

- 일본의 원산지 표시규정은 비특혜분야에서 통상법과 경쟁법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음
  - 원산지 표시는 통상법에서 권장 사항이지만 경쟁법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sup>31)</sup>
  - 원산지의 허위·오인의 경우 통상법과 경쟁법에서 모두 규제하고 있음
  
- 일본의 원산지 표시규정에 대한 통상법에는 관세법, 수출입거래법, 외국환관리법이 있는데 원산지 허위 또는 오인 유발표시에 대한 제제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sup>32)</sup>과 관세관계기본통달<sup>33)</sup>: 허위·오인표시 수입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 수출입거래법<sup>34)</sup>: 허위표시 수출금지·행정제제
  - 외국환관리법<sup>35)</sup>: 오인표시 수출금지와 오인표시 수출자 형사처벌

31) 관세청, 일본원산지제도, 2003, pp.1~2  
 32) 관세법 제71조, 제78조, 제87조, 제88조  
 33) 관세관계기본통달 71-3-1~6  
 34) 수출입거래법 제4조

- 일본의 원산지 표시규정의 경쟁법에는 경표법, JAS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으며,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음
  - 1950년에 제정된 JAS법은 1993년 개정을 통해서 JAS규격을 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도 품질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품질 표시대상을 확대
  - JAS법과 경표법에서는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지정
  - 원산지 표시의 위반행위 제제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사상 규제를, 경표법은 일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정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sup>36)</sup>
    - 부정경쟁방지법<sup>37)</sup>: 허위·오인 표시자 손해배상(민사)책임
    - 경표법<sup>38)</sup>: 부당표시의 금지, 중지/재발방지명령

## 다.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 1) 대상물품

- JAS법은 41개의 수입식품류를 지정하고 있으며, 경표법에서는 ‘공정거래규약’에 따라 30개의 품목을 규정
  - 공정거래규약은 경표법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 품목으로 식품류와 식품 이외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음
- JAS법과 경표법과는 달리 의류와 녹차의 경우에는 별도규정을 두어 ‘부당한 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관을 허용하는 소극적 규정방식을 채택<sup>39)</sup>
  - 의류의 경우 상품의 원산국에 관한 부당한 표시에 근거하여 제정된 ‘의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운용세칙’에 따라 부당한 표시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입허용

35) 외국환관리법 제48조 3항 및 제70조 29와 수출무역관리령 제2조 및 별표2

36) 관세청(2003), p. 41

3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0항, 제3조 및 제4조

38) 경표법 제2조, 제4조 및 제6조

39) 성윤갑(2005), p. 49

- 녹차의 경우 가공하지 않은 차의 제조가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로 보지 않아 수입허용

가) JAS법에 의한 표시대상물품

□ JAS법에 따르면 햄, 소세지, 베이컨, 통조림, 아이스크림, 어묵, 어포, 면류, 장류, 식초, 조미료, 음료 등 식품류를 표시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sup>40)</sup>

- 로스햄, 본레스햄, 레스햄, 쇼올더햄, 베리햄      ○ 프레스햄
- 혼합 프레스햄      ○ 소세지
- 혼합 소세지
- 베이컨류(미들 베이컨, 사이드 베이컨 제외)
- 축산물 통조림, 축산물 캔(우유 및 유제품 통조림 및 캔 제외)
- 칠드 햄버거 스테이크      ○ 아이스크림
- 특수 포장어묵류      ○ 어육 소세지
- 어육 햄      ○ 가당랭이포
- 섬계 가공품(섬계 무침도 포함)      ○ 건조 미역, 염장 미역
- 야채 통조림 민 야채 캔
- 토마토 가공품(토마토 퓨레, 토마토 레이스 제외)
- 건조 포테이토      ○ 잼류      ○ 버찌
- 건면류      ○ 즉석면      ○ 마카로니류
- 냉동된 두부      ○ 된장      ○ 장류
- 우스카 소스류      ○ 드레싱      ○ 식초
- 국수용 장국      ○ 조미료      ○ 건조소프
- 마가린
- 새우프라이, 고로끼, 찢만두, 교자, 햄버거 스테이크, 미트볼, 어육햄버거, 어육볼(조리되지 않고 냉동된 것에 한함)
- 조리된 식품 통조림 및 캔(육류나 계란을 원재료에 사용한 것에 한함)
- 레토르트 파우치식품      ○ 탄산음료
- 과실음료(농축과즙된 과실 퓨레스트 제외)
- 두유, 조제두유 등 두유음료      ○ 식물 식용성 유지

40) 관세청(2003), p. 32

나) 공정거래규약에 따른 표시대상물품

- 경표법에 의하여 업계 자율로 정한 품목은 식품류 중 커피, 맥주, 위스키 등이 있고 비식품 제품으로 가전제품, 화장품, 세제, 치약, 사진기 등이 있음<sup>41)</sup>

○ 식품류	발효유 및 유산균 음료, 살균 유산균 음료, 아이스크림, 로얄제리, 벌꿀, 섬계알젓 식품, 명란젓 식품, 가츠오부시, 식품 통조림, 토마토 가공품, 비스킷류, 초콜렛, 초콜렛 이용식품, 츄잉껌, 냉동 두부, 식초, 커피음료류, 두유류, 마가린류, 인스턴트 커리, 햄 및 소세지, 맥주, 위스키
○ 식품이외의 제품	혁띠(기모노용에 한함), 안경류, 가전제품, 화장품, 화장비누, 가정용 합성세제 및 가정용 비누, 치약, 자동차, 타이어, 사진기계, 애완용 동물의 먹이, 낚시대, 피아노, 스포츠용품, 전자건반악기, 자기메디아 제품

2) 표시기준

가) 법규 또는 행정지침상의 기준

- 일본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법규에서 ‘부당한 표시’ 또는 인정될 수 있는 사례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
  - 관세법, 수출입거래법, 경표법 및 「상품의원산국에관한부당표시」고시에 의하여 공정거래위가 제정한 「상품의원산국에관한부당한표시운용기준」<sup>42)</sup>에서 표시방법을 언급
- 관세법의 표시방법은 단순조립물품, 원산지 오인물품에 대한 표시언어, 허위·오인 표시에 대한 정정표시를 관세관계기본통달에서 규정
  - 단순조립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에서 조립한 물품이다」라는 취지로 표시<sup>43)</sup>
    - 나사·볼트·너트 등의 조립 또는 용접과 같이 단순한 작업을 거쳐 조립되는 것을 단순조립이라 하며, 탁상용 전자계산기나 시계의 부분품 셋트조립은 단순조립에 해당하지 않음

41) 관세청(2003), p. 33

42) 1973년 10월 16일 사무국장통달 제12호

43) 관세관계기본통달 71-3-1(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

- 일본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물품의 표시언어는 일본문자로 표시하도록 함
- 허위표시 또는 오인 유발 표시 수입물품에 대해 당해 표시를 말소·정정하는 경고 「수입후 용이하게 재정정되는 등 단지 통관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sup>44)</sup>
- 수출입거래법에서는 허위 원산지 표시로 적발된 수출물품에 대한 표시방법을 언급하고 있음
  - 허위 원산지 표시의 국명(지명)을 말소·정정하고 브랜드명과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sup>45)</sup>
- 경표법상의 표시방법은 ‘부당한 표시’와 관련하여 표시매체, 표시위치, 표시언어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표시매체 : 일반적인 제한은 없으나 오인 유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표시와 같은 매체로 표시
  - 표시위치 : 일반적인 제한은 없으나 오인 유발 표시가 있는 경우 상품, 용기, 포장 또는 이들에 첨부된 물품(라벨, 꼬리표 등)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
  - 표시언어 : 일반적인 제한은 없으나 오인 유발 표시가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여도 원산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산지명과 그 상품과의 관계를 ‘일본문자’로 표시

#### 나) 부당한 표시

- ‘부당한 표시’의 내용 및 사례는 관세법과 경표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일반적인 원산지 표시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부당한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원산지 표시는 수입 또는 수출의 통관에 문제가 없을 것임
  - 관세법에서는 부당한 표시의 유형으로 허위 표시, 오인 유발 표시의 정의, 적용범위와 사례를 규정하고 있음

44) 관세관계기본통달 71-3-6(허위 표시 등의 말소 등)

45) 1991년 10월 21일 통산성 무역국 수출과 「원산지표시에 관한 통지」

- 개인용품, 주문수집 또는 제작을 위한 견본품, 시제품은 원산지의 부당한 표시 규정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1) 관세법상 부당한 표시

- 허위 표시란 원산지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의미함
  - 포장용기와 내용물의 생산국이 서로 다른 경우 포장용기에 내용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원산지 허위 표시로 보지 않도록 함
  - 내용물과 부분품(용기, 포장, 라벨 등)의 원산지가 서로 다른 경우 부분품의 수입자는 부분품의 용도에 사용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오인 유발 표시란 명백히 허위의 원산지가 표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객관적으로 보아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하도록 표시된 경우를 말하며, 관세관계기본통달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단, 오인 유발 표시 이외에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있고, 그 크기·표시장소 등이 오인 유발 표시의 크기·표시장소 등에 비교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오인 유발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표 II-8〉 일본의 오인 유발 표시 사례

구분	내용
비원산지 국가명이 표시	다른 문구 등이 없는 경우
	비원산지 국가명을 일부로 사용하여 상표 등이 표시된 경우
	수출국을 표시하는 자구,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자구와 함께 표시된 경우 (예; Imported from OO국, Licensed by OO국)
비원산지 상징물이 표시	당해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로서 표시된 경우(예; Fabric, Made in OO국)
	비원산지의 국기, 도안 또는 상징물을 사용한 상표 기타 무늬가 표시된 경우
기타	물품의 원산지에 소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사의 명칭 또는 상표 기타 무늬가 표시된 경우
	비원산지국 특산물 명칭이 표시된 경우
	부분품, 용기, 포장, 라벨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비원산지국의 유명한 풍경이 그려진 경우
	비원산지국 이외의 국가의 문자를 사용한 설명문 또는 광고 등이 표시된 경우

자료: 관세청, 「일본 원산지제도」, 2003, p. 38~40 참고로 요약 정리

(2) 경표법상의 부당한 표시

- 경표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상품의원산국에관한부당표시」에서 국내생산품에 대한 부당표시와 수입물품에 대한 부당표시로 나누어 규정함
  -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잘못된 아래의 표기로 국내 생산품임을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
    - 외국의 국명, 지명, 국기, 문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표시
    - 외국의 사업자 또는 디자이너의 성명, 명칭 또는 상표 표시
    - 문자에 의한 표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외국의 문자로 표시
  -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잘못된 아래의 표기로 당해상품의 원산국을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
    - 비원산지국의 국명, 지명, 국기, 문장 기타 이들과 유사한 표시
    - 비원산지국의 사업자 또는 디자이너의 성명, 명칭 또는 상표 표시
    - 문자에 의한 표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일본문자로 표시

3) 표시위반에 대한 처리

- 원산지 표시의 허위·오인 표시에 대해서도 통상법과 경쟁법 분야 모두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통상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규제와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입거래법 규제가 있음
  - 경쟁법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사규제를, 경표법은 일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정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가) 통상법에 의한 규제

- 관세법의 규제대상은 원산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허위 표시 또는 오인을 일으키도록 표시한 외국물품이 됨
  - 원산지 허위 표시 또는 오인 유발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표시를 말소·정정하거나

당해물품을 반송할 수 있음(관세법 제71조 및 제78조)

- 수입신고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세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세관장은 당해 물품을 유치하고, 허위 표시 또는 오인 유발 표시를 말소한 뒤 공매할 수 있음(관세법 제87조 및 제88조)

□ 수출입거래법에서는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 수출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수출정지 제재가 가능함(수출입거래법 제4조)

-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이 적발되면 국명·지명을 말소·정정하고 브랜드명과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외국환관리법에서는 원산지 오인 표시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외국환관리법 제48조 및 수출무역관리령 제2조 및 별표2)

- 경제산업대신의 승인 없이 원산지 오인표시물품을 수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나) 경쟁법에 의한 규제

□ 부정경쟁방지법은 원산지 허위 표시와 출처 오인 표시를 부당경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부당경쟁방지법 제2조 제10항)

- 원산지 허위 또는 오인 표시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제3조), 침해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음(제4조)
- 오인 유발 표시의 사례<sup>46)</sup>
  - 일본제 향수병에 프랑스 풍물을 묘사하고, 프랑스어로 가공의 상표와 설명문 기재
  - 일본제 신사복에 영국의 지명(England, London)과 그 도안을 표시

□ 경표법에서는 원산지의 '부당한 표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

46) 관세청(2003), p. 41

위의 중지 또는 재발방지조치를 명할 수 있음(경표법 제2조, 제4조와 제6조)

### 3. 싱가포르

#### 가. 개요

- 싱가포르는 칠레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맺은 FTA 체결국으로 2004년 1월 협상이 개시된 후 2004년 11월에 타결되어 2005년 8월에 공식 서명되었으며 2006년 3월 2일부터 발효되었음<sup>47)</sup>
  -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되, 일부 민간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 － 싱가포르는 현재 실행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재 소주, 맥주 등 주류 6개 품목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발효 즉시 관세철폐하고,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91.6%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
  
- 한·싱가포르 FTA의 원산지 규정에서는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부분이 2가지로 나타남<sup>48)</sup>
  - 싱가포르의 역외가공과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있음
  
-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은 HS<sup>49)</sup> 6단위 기준 4,625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경우에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sup>50)</sup>

47) 관세청, FTA포탈, 2010년 6월 25일 접속  
[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1&page=/fta/html/kor/situation/data\\_05.html&mc=FTA\\_SITUATION\\_WO5](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1&page=/fta/html/kor/situation/data_05.html&mc=FTA_SITUATION_WO5)

48) 성윤갑(2007), p. 18과 p. 556

49)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는 상품분류체계의 통일과 국제무역의 원활화 및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목적으로 1983년에 제정하고 1988년부터 시행중인 HS 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를 의미

50) 성윤갑(2007), p. 557

- 동품목은 개성공단 및 한반도 내의 그 밖의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것으로 양해된다  
고 명기됨<sup>51)</sup>
- 개성공단의 생산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협정상의 근거를 마련

## 나. 원산지 표시제도 규정

- 싱가포르의 원산지 규정에 관련된 사항은 수출입법(Regulation of the Imports and Exports Regulation 1995)에 규정되어 있음
- 싱가포르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법 규정에서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싱가포르 수출품목에 대해서 ‘Made in Singapore’의 표시나 라벨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입국가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별도로 자문을 해주고 있음<sup>52)</sup>
  - 싱가포르 수출업자가 필요할 때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 CO)을 발급
- 싱가포르는 수입에 적용되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없으며 특례 원산지 규정만 적용되고 있음
  - 싱가포르는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케이스별로 특례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한·싱가포르 FTA에 의하면 원산지 증명서를 정부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기관발급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sup>53)</sup>
    -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사업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에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51) 한·싱가포르 FTA부속서 4B 제2절

52) Singapore Customs, FAQ on Certifies of Origin, I&E Notice No,10/96

53) 성윤갑(2007), p. 224

## 4. 베트남

### 가. 개요

-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협정에 포함된 아세안 10개국 중 하나임
  - 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 1일에 발표될 당시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이었으나, 태국을 마지막으로 해서 현재 체결국은 10개국에 이룸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필리핀, 부르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2006년도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라 아세안 국가에 싱가포르도 포함되어 있어 FTA 적용 선택 가능함<sup>54)</sup>
  
-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규정에서는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은 인정하고 있음<sup>55)</sup>
  - 역외가공 대상지역을 개성공단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 대상품목은 HS 6단위 기준 232개 품목으로 각 회원국별로 100개임
  -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에서만 발급

### 나. 원산지 표시제도 규정

- 베트남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규정은 현재 파악할 수 없었음
  - 한·아세안 FTA에 의하면 원산지 증명서를 정부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기관발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음<sup>56)</sup>
    -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베트남통상부(베트남상공회의소와 무역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세관과 상공회의소에 한정됨

54) 관세청, 한·아세안 FTA집행에 관한 지침, 2009년 1월 29일

55) 성윤갑(2007), p. 548

56) 성윤갑(2007), p. 258

- 베트남의 경우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독립된 법령체계는 없으며 행정지침에 따라 발급됨

## 5. 노르웨이

### 가. 개요

- 노르웨이는 개도국산 수입품에 GSP(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 수혜를 공여하기 위하여 재무부의 발안으로 1971년 국왕의 제가를 얻어 원산지 규정에 대해 제정하였음<sup>57)</sup>
  - GSP수혜국을 최빈수혜국과 일반수혜국(한국)으로 이분화하여 운영함
-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노르웨이는 HS code 1-23류 및 61-63류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고, 여타품목은 무관세임
  - 최빈수혜국에만 관세가 면제되는 61-63류를 제외할 경우 GSP제도가 실제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며, 여타 공산품의 경우 무관세이므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나. 원산지 표시제도 규정<sup>58)</sup>

- 원산지 규정의 기본원칙은 해당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물품임
  - GSP 수혜국 간에 지역경제블럭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블록소속 국가의 원료를 수입, 사용한 경우 해당국산 원료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 GSP 수혜국산 제품이 노르웨이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국산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57) 통일부 내부자료(2005)

58) 『개성공단 생산 제품 수출관련 주요국의 무역제도』, 통일부 · kotra, 2005, p. 8

○ GSP 수혜국산 제품이 EU나 스위스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국산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 노르웨이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세법상 일반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음

#### 다. 한·EFTA FTA와 역외가공

□ 한·EFTA FTA의 경우 역외가공 품목제한 없이 모든 물품에 대해 일반적 역외가공기준과 HS 6단위 기준으로 267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적 역외가공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적 역외가공기준은 역외가공비용이 10% 이하에 불과한 경우에 품목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함

－ 당해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 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그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하거나 불충분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야 함<sup>59)</sup>

○ 제한적 역외가공기준은 역외가공비용을 포함해서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40% 이하 이면서 최종 제품의 총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60% 이상이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함

－ 제한적 역외가공기준에 해당되는 품목이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해당되는 것임<sup>60)</sup>

59) 한·EFTA FTA 부속서 I 의 부록4 제1항

60) 한·EFTA FTA 부속서 I 의 부록4 제2항

## 6. 스위스

### 가. 개요

- 원산지 기준(Ursprungskriterien)의 기본원칙은 해당국가에서 완전 생산되거나 제조된 물품임<sup>61)</sup>
  - 스위스산 원산지(Schweizerischer Ursprung)는 국내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 또는 충분한 가공이나 제조된 물품이 해당됨
  - 완전 생산 또는 제조(Full production or manufacture)는 완전하게 획득(domestic wholly obtained)되거나 생산된 상품 말함<sup>62)</sup>
- 제3국을 통해 수입된 원자재와 부품도 스위스산(made in Switzerland)의 원산지를 획득할 수 있음
  - 스위스에서 제조되어 최종 판매가격의 60%~80%의 부가가치가 스위스에서 생성된 경우임

### 나. 원산지 표시제도 규정

- 스위스의 원산지표시(indications of source)는 상표법(Loi sur la protection des marques)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히 시계에 대해서는 시계‘스위스’사용법(Ordonnance du 23 décembre 1971 réglant l’utilisation du nom “Suisse” pour les montres)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에는 물품과 서비스의 원산지 표시를 직접적 표시(geographic name)와 간접적 표시(Swiss Cross, Matterhorn)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스위스는 지리적 원산지의 특별 지명을 사용한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

61) Verordnung über die Beglaubigung des nichtpräferenziellen Ursprungs von Waren §9

62) Verordnung über die Beglaubigung des nichtpräferenziellen Ursprungs von Waren §10

지 않음

- 다만, 시계와 치즈의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를 우려하여 예외를 두고 있음
  - 전자식 시계(쿼츠 시계) 무브먼트는 스위스 부속품의 60%, 기계식 시계의 무브먼트에는 부속품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완성 조립된 쿼츠 및 기계식 시계의 최소 스위스부품 사용비율이 각각 60% 및 80% 이상 되어야 스위스를 원산지로 표시 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스위스산은 스위스라는 단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산지 표시가 가능함
  - Switzerland, Swiss, Swiss quality, Made in Switzerland, Swiss Made
  - 위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상표법에 따름
    - 원산지는 물품의 생산(제조) 장소 또는 기초 물질 및 사용된 구성 부품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sup>63)</sup>
  - 제조방법(원리)과 물품 품질 필요사항에 따라 관습적 또는 법에 따른 원산지가 결정될 수 있음(예: 시계, 농업제품)

- 원산지 표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부정확한 원산지 표시
  - 적용할 수 없는 원산지 표시로 인해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
  -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외국산(foreign origin) 물품과 관련된 주소, 이름, 상표 등

---

63) Trademark Law §48(1)

##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1. 국제비교

- 주요국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원산지 표시 형식과 방법, 근거 법 규정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법 규정은 물품의 종류, 특성에 따라 관세법 이외에 여러 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우리나라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관세법, 통상무역법, 자동차표시법, 섬유제품증명법 등에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관세법,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수입물품에대한농림물자의규격화및품질표시의적정화에관한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음
  - 스위스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상표법에서 다루고 있으면서 시계 품목의 경우 시계 ‘스위스사용법’이라는 별도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이 독특함
  
- 원산지 표시가 적용되는 특정물 물품은 국가별로 공산품, 농산품목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수입물품 중 농수산물, 식품류, 의류, 전자제품 등의 소비재위주로 HS 7단위 653품목을 원산지 표시 기준 적용물품으로 관리
  - 미국은 자동차, 섬유류 등 특정품목에 대한 개별법령과 기타물품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어 미국산 제품을 판정하는 기준과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JAS법에 있는 식품류와 경표법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 스위스는 지리적 원산지의 특별지명을 사용한 물품의 원산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

지만 시계와 치즈 등의 농산품목은 원산지 표시 규정이 적용

- 원산지 표시를 하는 위치와 방법과 관련하여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치와 방법 규정은 간단명료하나, 객관적이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
  - 미국의 원산지 표시 원칙은 최종구매자가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으며 영구적이어야 하며, 물품 및 용기 방식 등에 따라 세부적인 지침이 있음
    - 용기의 경우 일회용, 재사용 가능여부, 물품적재 여부 등에 따라 표시방법이 다르며 물품의 원산지 국가의 표시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
  - 우리나라는 원산지 표시 위치는 ‘소비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판독가능성 수준에 대한 정도를 가늠하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없음
  - 일본의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 또는 ‘오인 유발 표시’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부당 오인 유발 표시에 해당되지 않으면 하자가 없는 원산지 표시가 됨
  
- 원산지 표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공통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 베트남, 노르웨이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세법상 일반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음
  - 싱가포르와 베트남과 같이 아세안에 포함된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정부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기관발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표 IV-1〉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원산지 표시제도 비교

구분	항목	구체적 내용		
		우리나라	미국	일본
법규	관련 규정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등	관세법, 통상무역법, 자동차표시법 등	관세법, 부당경품류 및부당표시방지법 등
운영	표시대상 품목	HS 4단위 653품목	모든 수입물품 및 포자용기	해당물품 명기(JSA법에 41개, 경표법에 30개) 등
	제외대상 품목	대외무역관리규정에 12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2개 유형으로 나누어 구분	구체적 명기	별도 지정 없음
	표시위치	소비자가 용이하게 관독할 수 있는 곳	눈에 잘 띄는 곳	눈에 잘 띄는 곳
	표시방법	인쇄, 등사, 낙인, 스티커 등	물품자체에 표시, 감압라벨 등	규정 없음
처벌	표시위반	시정요구 조치, 벌금, 징역, 과태료 등	재표시, 반송, 벌금, 징역 등	반송, 공매, 수출제재, 벌금, 징역 등
기타	특징	-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을 수입단계에서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법규에서 사례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2. 시사점

□ 원산지 제도는 원산지 결정 규정, 원산지 확인 규정과 원산지 표시규정으로 구성되고 있음<sup>64)</sup>

○ WTO에서 통일 원산지 규정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일 원산지 협정은 직접적으로 원산지 결정과 관련됨

64) 성윤갑(2005), p. 207

- 원산지 결정 규정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특혜나 무역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 규정과 불공정무역방지 및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적용되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나누어짐
  - 원산지 표시제도는 통일 원산지 규정과 무관하게 각국가에 일임되어 운영되며,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만 해당함
- 오늘날 세계경제는 국가간 교역이 활발해지고 상품의 생산이 다국적화 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제도는 WTO 통일원산지 규정과 무관하게 WTO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각국은 국내소비자 보호문제와 공정무역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법률, 규정 및 판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는 수출대상국 혹은 수입대상국과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표시방법 및 위치 등을 규정한 원산지 표시규정은 무역당사자의 경쟁력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원산지 표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이 체계적으로 구비되어 있지는 않음
- 원산지 표시가 적용되는 물품이 다양하고, 수입되는 품목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가 산재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규정하다보니 통일적인 원산지 표시 규정이 존재하기 어려움
  -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 중 미국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침을 구비하고 있으며, 일본은 ‘부당한 또는 오인 유발 표시’에 대한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가별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역외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규정은 관세법상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역외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미국의 조건부 표시제도의 필요성을 고

려해 볼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라벨링법이나 표시광고법 등에서 구체적인 조건부 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조건부 표시방법에 따르면 해당물품의 미국산 내용물 또는 공정이 접하는 비중, 양 또는 유형에 따라 ‘미국내용물 및 외국내용물로 미국에서 제조’와 같이 표시가 가능함
  - 조건부 표시 방법에 따르면 제공과정 또는 공정이 특정국가에서 이루어진 경우 구체적으로 표시가 가능함
  - 우리나라도 조건부 표시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국가의 비관세장벽으로 운영되고 있어,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 제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함
-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과 면제대상, 표시 위치 및 방법과 더불어 역외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부록]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 규정

대외무역법
<p><b>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b></p> <p>①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gt;</p> <p>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 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li> <li>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li> <li>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li> </ol> <p>④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gt;</p> <p>⑤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gt;</p> <p>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lt;개정 2008. 2. 29&gt;</p>
대외무역법 시행령
<p><b>제5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b> 지식경제부 장관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물품(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공고하려면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gt;</p> <p><b>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b></p> <p>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li> <li>2.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li> <li>3.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li> <li>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li> </o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 29&gt;</p>

- ③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7조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 ① 제5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확인 요청과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통관할 때 제5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과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개정 2008. 2. 29>

#### **제58조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 ① 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원산지 표시의 원상 복구, 정정, 말소 또는 원산지 표시명령
  - 2.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 ② 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 2.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 3. 시정기한

#### **제5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 장

<p>관에게 알려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p> <p><b>제6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b></p> <p>① 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p> <p>② 지식경제부 장관은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lt;개정 2008. 2. 29&gt;</p>
<b>대외무역관리규정</b>
<p><b>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등)</b></p> <p>① 영 제5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계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li> <li>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트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li> <li>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li> <li>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li> <li>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li> <li>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li> <li>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li> <li>8.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li> </ol> <p><b>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b></p> <p>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li> <li>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li> <li>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li> <li>4.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li> <li>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li> </ol> <p>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식별하기 용</p>

이한 곳이란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 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Switzerland를 “Swiss” 등으로 표기).
- ⑦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 사항이 라벨, 스티커, 꼬리표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 사항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 ① 법 제33조 제3항 제1호의 원산지 오인 우려 표시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상표·지역·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7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또는 진열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풋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78조(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 ① 영 제56조 제4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처리되어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제거되거나 은폐·제거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포장 판매업자(수입자가 판매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재포장되지 않고 날개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 경우에

도 물품 또는 판매용기·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 풋말부착 등의 방법으로 수입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제조·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수입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당 물품명)의 원산지: 국명”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 통관 후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같은 물품을 제3자(중간 구매업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양도(제3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을 알려야 한다.

####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 ① 별표 10에 열거된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②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 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제81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의 세부사항)

- ① 관세청장은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이 아닌 물품의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 부품을 포함한다)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p> <p>② 세관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을 사후 확인할 수 있다.</p> <p><b>제83조(원산지 표시의 확인·검사)</b></p> <p>① 별표 8의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시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수입되는 물품이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표시·정정·말소 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수입신고 후 통관된 물품이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표시·정정·말소 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④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표 11과 같다.</p> <p><b>제84조(원산지 표시의 사전확인 및 이의제기)</b></p> <p>① 관세청장은 영 제57조 제1항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56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적정한 표시방법을 확인하여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 내용에 대하여 영 제57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이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 사전확인 및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b>관세법</b></p>
<p><b>제230조(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b></p> <p>세관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li> <li>2.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li> <li>3.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li> </ol> <p><b>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b></p> <p>① 세관장은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중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은 이를 유치할 수 있다. &lt;개정 2007. 12. 31&gt;</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하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유치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p>

<p>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세관장은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이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유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p> <p>⑥ 세관장은 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60조 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235조에 따른 상표권 및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당해 권리의 보유자에게 유치사실을 통보한 후 권리보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의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6. 12. 30, 2007. 12. 31&gt;</p>
<p><b>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b></p>
<p><b>제2-3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 확인 방법)</b></p> <p>① 법 시행규칙 제76조 단서규정 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물품(경유지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후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경유국 내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상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B/L사본 및 원산지 증명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반출입허가서 등 운송서류에 의해 세관장이 환적 또는 일시장치 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B/L사본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 12. 9)</p> <p>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적 또는 일시장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12.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나라로 수출하였으나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의 항구·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하였고 세관 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li> <li>2. 박람회 등에 전시하였음을 비원산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서</li> <li>3. 기타 세관장이 원산지 및 직접운송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p>③ 제2항의 증명서류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및 포장의 개수, 기호, 번호</li> <li>2. 비원산국에서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기)명, 선박(기)의 등록번호, 적재일자</li> </ol> <p>④ 세관장은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비원산국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것임이 증명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원산국 발행 원산지증명서상에는 “원산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발행기관·발행일자와 함께 당해 증명서를 기초로 발행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p> <p><b>제3-1조(원칙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b></p> <p>① 원칙적 원산지 표시 방법이라 함은 현품에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p>

② 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제3-2조(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

①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이라 함은 현품에 날인(stamping), 라벨(labelling),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9)

1. 당해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2.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를 할 경우 물품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
3.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가 건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최종구매자의 피해우려가 없는 경우

③ 별표5의 사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예외적인 방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예외적 표시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약사법·식품위생법·검역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품명·성분·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8. 12. 9)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8. 12. 9)
2. 원산지 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제3-3조(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표시방법 지정)**

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에 의거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은 별표6과 같이 하며, 관세청장이 이를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개정 2008. 12. 9)

② 제1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 1. 1)

**제3-4조(원산지국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 12. 9)

1. 영문으로 국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 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 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표시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과거 별도의 국가였던 이유 등으로 국제적으로 지역명 표시를 용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영국내의 Scotland)
5.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 제3-5조(원산지 표시의 면제)

-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규정한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12. 9)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에 포함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9)

### 제3-6조(수입통관 후 원산지 표시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등(개정 2008. 12. 9))

- ① 법 제227조, 제26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 수리 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과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에는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9)
  1. 재포장되는 물품
  2. 분할포장되는 물품
  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
  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날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5. 산물
- ② 제1항에 의한 원산지 표시 등 의무의 통지는 다음 각호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8. 12. 9)
  1. 관세청장이 지정한 별표12의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통관 후 원산지 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수입자(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의무이행 요구사항(별표7)의 내용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및 수입신고필증에 표시(개정 2008. 12. 9)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의무이행 요구사항(별표7)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다만, 서류 없는 수입신고(P/L신고)의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같음할 수 있다)(개정 2008. 12. 9)
- ③ 제2항 제1호의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의 수입자 및 수입자로부터 양수하여 재양도한 자(중간 구매업자 등으로부터 재양수한 자 포함)는 해당물품을 양수한 자에게 「수입통관 후 원산지 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 사본을 교부하고, 양도후 3일 이내에

양수한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양도증량, 양도일자 등을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별지 제6-1호 서식)」에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12. 9)

- ④ 제3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 제출은 관세청 “수입물품 통관·유통 이력관리 시스템”에 관련내용을 전산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8. 12. 9)
- ⑤ 제3항에 따라 수입자 및 양도자 등으로부터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관련내용을 “수입물품 통관·유통 이력관리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08. 12. 9)

#### **제44조(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 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 12. 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 **제44조의2(원산지 사전판정)**

-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사전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91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 12. 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사전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 사전판정 신청서(별지 제8-1호 서식)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 **제46조(세관 원산지심사위원회)**

- ① 세관장은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산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원산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세관의 실정에 맞도록 세관장이 정한다.
- ③ 원산지 표시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1조(허위 표시물품의 판정)**

- ① 허위표시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2. 9)
  1. 실제 원산지 국명 표시가 없이 “Made in” 등과 같이 명백히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비원산지 국명(지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한 경우
  2. “Made in” 등과 같이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백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원산지 국명 표시는 없이 비원산지 국명·언어만을 표시하거나 원산지와는 관련이 없는 표현과 비원산지 국명을 함께 표시함으로써 오인 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 표

시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8. 12. 9)

3. 원산지 표시를 하였더라도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 지역명을 상표 등으로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한 경우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실제 원산지 국명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였더라도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허위표시물품에는 별표8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 제5-2조(오인 표시물품의 판정)

- ① 오인 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 표시를 한 경우로서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표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를 말하며, 별표9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 오인 표시 이외에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그 아랫줄 또는 윗줄 등 근처에 현저하게 있는 경우
  2. 오인 표시의 크기·위치·선명도·견고성 등과 비교하여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진정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 ② 세관장은 현품의 오인 표시상태와 제1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오인 표시물품으로 판정할 수 있다.
- ③ 포장 또는 현품에 원산지국 이외의 언어가 현저하게 표기되어 있어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해당되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개봉하는 포장 윗부분 등 잘 보이는 위치 및 오인 표시가 있는 현품에 오인표시보다 명확한 활자체와 색상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 스티커 등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에는 오인 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 제5-3조(부적정 표시물품의 판정)

- ① 부적정 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선명도·글씨체, 국가명의 약어표시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곤란하거나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부적정 표시물품에는 별표10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 제5-4조(미표시 물품의 판정)

- ① 미표시 물품이라 함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2. 9)
  1. 현품 및 용기에 원산지표시가 전혀 없거나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함에도 현품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2. 원산지 표시는 되어있으나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예 : 들기 곤란한 가구의 밑바닥에 원산지 표시 등)
  3. 상거래 관행상 최소판매단위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 ② 미표시물품에는 별표11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표시손상의 판정)** 표시손상이라 함은 원산지 표시가 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그 부분에서 다른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원산지 표시 관련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원산지 표시와 관련 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에 규정된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법 제132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개정 2008. 12. 9)

**제5-7조(원산지 표시상태의 입력)**

- ① 수입신고물품 중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원산지표시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검사 익일까지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규격 물품을 수입검사한 사실이 있고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상태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전 검사한 수입신고번호의 입력 등 간이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영 제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업체”, 법 제24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신용담보업체”,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상태 촬영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포장의 전제운과, 수입자 표시 및 원산지 표시상태
2. 현품의 전제운과, 상표·수입자 표시 및 원산지 표시상태

- ② 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동일하게 표시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수입자가 다른 세관에서 통관시 적정 표시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은 제1항의 전산입력 자료를 조회하여 적정여부를 비교 심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입력 내용을 조회한 결과 신고된 당해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물품이고 원산지 표시가 동일한 경우로서 이미 다른 세관에서 적정한 표시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세관의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④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원산지 표시가 부적정하거나 상표권 침해대상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표시상태 등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촬영한 후 의심되는 사항과 함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⑤ 수출신고물품 중 원상태수출(72)·반송(78)·중계무역(79)·수리검사 재수출(84)·전시박람회 참가 후 재수출(86) 및 계약상의 재수출(93)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표시상태를 촬영하여 검사 익일까지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1조(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 ① 세관장은 통관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230조 규정에 의거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2.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
3. 원산지 표시가 손상 또는 변경된 물품
4.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으로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

-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표시위반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경력 조회한 결과 동일공급자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품목에 대하여 최초로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 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5-3조의 부적정 표시물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적정하게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 ④ 제2항에서 “유사품목”이라 함은 종전에 적발·시정된 물품과 HS 6단위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은 관리대상화물 등 신고 전에 적발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허위 표시는 제외), 수입신고 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 한한다.

#### 제6-2조(시정조치 요구)

- ① 법 제230조 단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원산지 표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 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송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 12. 9)
1. 규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보완·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의 보완·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
  3. 기타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세관장이 원산지 표시 시정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위반내역과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원산지 표시 시정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출력한 후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원산지가 허위 표시·오인 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다음 각호의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 중 원산지가 미 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9)
1. OECD 국가(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등)(신설 2008. 12. 9)
  2. 기타 국가(싱가포르, 홍콩 등)(신설 2008. 12. 9)
- ④ 세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서 보완·정정의 시정방법 및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자 또는 신고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물품의 특성과 건전한 표시관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⑤ 화물관리부서에 대한 통보 및 제2항의 원산지 표시 시정요구서 교부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화주의 이메일을 입력하거나 신고인에게 EDI 방식에 의한 통보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⑥ 화주 아닌 신고인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화주에게 원산지 표시 시정요구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 제6-3조(원산지 표시 보수작업)

- ① 수입자는 수입물품이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수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신고 전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 후 법 제2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시정요구
  3. 환적물품에 대한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 ②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단, 제6-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세관장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확인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③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자가 원산지표시의 시정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종류, 표시방법, 작업기간 등을 명시하여 장치장소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보수작업승인(별지 제11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당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 여

부에 대하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보세사 또는 화물관리 공무원이 보수작업완료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수작업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해당 전산시스템에 등록·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 확인내역 등록 및 통보는 통관포탈시스템 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보세 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4조(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의 처리)**

- ① 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양륙 또는 이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물품은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및 제42조 등의 위반혐의로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 ② 처벌종료 또는 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적물품 유치 및 수정명령서(별지 제12호 서식)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 표시가 시정된 후 선적을 허용한다.
- ③ 원산지 표시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질 등 수정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부여한다.

#### **제6-5조(범칙조사의뢰)**

- ① 세관장은 수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및 대외무역법령 등의 위반혐의로 범칙조사의뢰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9)
  -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고 판단 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 2. 동일화주가 원산지 미표시·오인 표시 또는 표시손상·변경의 위반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어 보완·정정의 시정조치가 있는 후 동일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동일 또는 유사품목이 1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다만, 다시 적발된 물품의 수량이 100개 이하 또는 과세가격이 US\$2,00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최초 적발된 경우라도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3. 세관장의 원산지 표시 보완·정정의 시정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4. 원산지 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수출입신고전에 시정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입신고 후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허위 표시 등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통관 및 화물관리부서에서 제1항의 조사의뢰시 적발하게 된 경위와 법령 위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세관·검찰 또는 법원 등에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되었거나 무혐의 등으로 조사가 종결된 경우 또는 조사담당 부서에서 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서 제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9)

#### **제6-6조(과징금 부과)**

-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판매 등의 사유로 시정할 대상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42조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한다.(개정 2008. 12. 9)
  - 1. 원산지 허위 표시(고시 제5-1조)

2. 원산지 오인 표시(고시 제5-2조)
  3. 원산지 미 표시(고시 제5-4조)
  4. 원산지 표시손상(고시 제5-5조)
  - ②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2 및 별표3에 의한다. 이 경우 위반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한다.(개정 2008. 12. 9)
  - ③ 과징금 부과시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수입자의 최근 2년 이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경력을 조회하여 별표13에 따라 기준금액에 가감하여 계산한다.(개정 2008. 12. 9)
  - ④ 세관장은 수입화주 또는 판매자에게 과징금부과예정통지(별지 제13호 서식)를 하여 수입자 또는 판매자 의견을 청취한 후 2주일 내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과징금부과 통지(별지 제14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9)
- 제6-7조(수입통관 후 원산지 표시 검사)**
- ① 세관장이 대외무역법·상표법 등의 위반혐의로 수입업체 등을 조사(기획심사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된 물품의 원산지 표시 적정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안 때에는 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명령(별지 제15호 서식)을 하여 시정조치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경과시에는 자체 보관창고에서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9)
    1.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
    2.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여된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당해 의무를 불이행한 때
  -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이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 보세구역반입 및 시정요구명령은 사건을 조사한 당해 세관의 조사부서 또는 심사부서에서 행한다.
  - ⑤ 검사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 및 시정명령시 위반사항과 시정할 사항을 화주에게 통보하고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보세구역 반입 명령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이 원산지 표시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시정명령세관장(부서)에게 통보하며, 자체창고에서 시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세관장(부서)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기타 보세구역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1조 내지 제5-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세관장(화물관리부서)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보세구역반입명령 실적을 집계하여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관세청, 일본원산지제도, 2003
- 박형래·라공우, 『관세론』, 두남, 2006
- 이명화, 「각국의 원산지표시 사례연구: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시대에 부응하여」, 한국행정학회, 2007
- 성윤갑, 「한국의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5
- 성윤갑, 『FTA 관세특례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 이제홍, 「원산지제반이론과 규정 분석 그리고 원산지 판정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2호, 2007
-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0
- 관세청,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지식경제부, <http://www1.mke.go.kr>
- 미하원 법개정위원회, <http://uscode.house.gov/lawrevisioncounsel.shtml>
- 일본 관세청, [www.customs.go.jp](http://www.customs.go.jp)
- 싱가포르 관세청, [www.customs.gov.sg](http://www.customs.gov.sg)
- 세계무역기구, [www.wto.org](http://www.wto.org)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세법연구 10-02

## 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 조사

---

2010년 8월 23일 인쇄

2010년 8월 30일 발행

저 자 김진수 · 조진권 · 정경화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0

ISBN 978-89-8191-511-7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